

#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58 |
|----------|----|

제안연월일 : 2022. 10. .  
제안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대화119 안전센터 승격(2016.8.5.)에 따른 소방력(인원, 장비) 대폭 증가로 청사가 협소하여 근무 공간 과부족 해소 및 효과적인 초기대응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평창소방서)에서 우리 군 토지에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을 계획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균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평창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현황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 외 5필지, 면적 A=2,388㎡
  - 세부내역

| 소재지                 | 지목 | 지적(㎡) | 소유자 | 비고 |
|---------------------|----|-------|-----|----|
| 계                   |    | 2,388 |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1    | 대  | 1,534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2-3  | 대  | 69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40 | 대  | 35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77 | 대  | 384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79 | 대  | 169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80 | 대  | 197   | 평창군 |    |

○ 증축개요

- 규모 : 철콘조 지상 2층, 연면적 450㎡(1층 240㎡, 2층 210㎡)
- 사업기간 : 2023년도~2024년도(2개년도 추진사업)
- 사업추진 : 강원도(평창소방서)
- 소요예산 : 14억원(도비 50%, 군비 50%) ☞ 자치단체부담금 사업, 건물 道소유
- ※ 2023년도 8억원(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2024년도 6억원(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 ※ 타 시군 지원현황 : 정선군(50%, 11억원), 인제군(50%, 10억원), 횡성군(50%, 12억원)
- 공간배치(안)

| 층별 | 세부시설 설치계획  | 비고 |
|----|--|----|
| 1층 | 센터장실, 구급차 차고 및 구급대 사무실, 장비보관함(12개) 설치, 차고, 공기충전실, 온수탱크실, 화장실(남, 여) |    |
| 2층 | 구급대 대기실, 여성대기실, 주방, 식당, 샤워실, 독신자 숙소(2실)                            |    |

○ 그간의 추진상황

- 2021. 4. ~ 10. : 증축 관련 협의(평창소방서·평창군, 군비 지원 50%)
- 2021. 5. ~ 6. : 증축 道 건의 및 서면심의·현지실사
- 2021. 8. : 道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 반영(소방본부)
- 2022. 3.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체결(강원도, 평창군)
- 2022. 8. : 대화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사업 군비 부담금 예산반영 요청

###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제2항 별표2

### 4. 참고사항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1]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2]
-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 [붙임 3]
- 군비 부담금 예산반영 요청 공문 : [붙임 4]

[붙임 1] 배치도 및 현장사진

< 증축건물 배치도 >



< 청사부족 현 실태 >



컨테이너 창고



장비보관함 차고 내 설치



사무실 내 식당 공간

## [붙임 2]

#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관계법령 발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8.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는 제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2020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49쪽 차호와 동일함.

- 예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시·군·구 소유의 부지내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공용 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과 공공용시설물(전용 노외 주차장, 주차빌딩 등) 등의 영구시설물이 이에 해당함

# [붙임 3]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평화와 번영 강릉시매



## 강 원 도



수신 팽창군수(안전교통과장)  
(경유)

제목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추가 협의사항 동의 회신

1. 귀 군의 발전을 기원하며, 팽창군 안전교통과-17085(2022. 2. 25.)호와 관련됩니다.
2.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추가 협의사항 반영 요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동의" 회신**하오니, 상호 합의한 바와 같이 **합의서(직안날인) 1부**와 함께 **팽창군의회 동의안 의결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수정내용 유선 협의 완료.

붙임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2부(원본별송), 끝,

강 원 도 지 서



|     |     |        |     |        |    |              |
|-----|-----|--------|-----|--------|----|--------------|
| 수발장 | 김경필 | 시설장비팀장 | 이강주 | 수발장비팀장 | 장일 | 2022. 3. 10. |
|     |     |        |     | 과장     |    | 김숙자          |

첨부자

시설 수발장비팀과-3608 (2022. 3. 10.) 정수 안전교통과-21246 (2022. 3. 10.)

주 24266 강릉시 춘천시 중앙로 1 강릉로청, 강릉로수발본부 (문의용) / <http://fire.gwd.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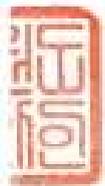
전화번호 033-249-5355; 팩스번호 033-249-4189 / [lemonade13@korea.kr](mailto:lemonade13@korea.kr) / 비공개(5,7)

보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유지에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증축에 따른」

#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2022. 3.



평창군  
PYEONGCHANG COUNTY



강원도  
GANGWON PROVINCE

『평창군유지에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평창군수와 강원도지사는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근무여건개선과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 청사증축” 과 관련하여, 평창군유지에 영구시설물축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는 평창군 소유 재산인 토지(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의 5필지)에 영구시설물인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를 축조하는에 있어서 필요한 합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사항)** 평창군수와 강원도지사는 “대화119안전센터 청사증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창군 소유인 토지 일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평창군은 군소유 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연관** 및 예산 일부를 부담하며, 강원도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하고 사업추진 후 건립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사업대상)** 대상토지 및 영구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① 대상토지

| 소 개 지               | 지목 | 지적(㎡) | 소유자 | 비고 |
|---------------------|----|-------|-----|----|
| 계                   |    | 2,388 |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1    | 대  | 1,534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2-3  | 대  | 69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40 | 대  | 35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77 | 대  | 384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79 | 대  | 169   | 평창군 |    |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5-80 | 대  | 197   | 평창군 |    |

② 영구시설물(대화119안전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3년(재속비 사업)
- 사업추진 : 강원도(평창소방서)
- 사업비 : 14억 원(도비 50%, 군비 50%) ⇒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 사업규모 : 철골조 지상 2층 1동, 바닥 240㎡, 연면적 450㎡, 층고 10m내외
- 층별용도 : (1층) 차고, 사무실, 창고 (2층) 식당, 휴게실, 독신자숙소

제4조(시설의 건설)

- ① 대화119안전센터(영구시설물) 건설공사는 강원도(평창소방서)가 시행한다.
- ② 강원도(평창소방서)는 영구시설물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강원도(평창소방서)는 공사착공 및 준공 등 공사 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평창군에 통지 한다.

제5조(시설 소유권 및 관리운영 등)

- 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축된 “대화119안전센터 청사”의 소유권은 사업주체인 강원도에 귀속하고, 평창소방서장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제2장 제3절 2) (4) 건설중인 공사 지출에 따른 회계처리

- ② 강원도(평창소방서)는 제3조 제2항의 영구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의 토지에 지상권 등 어떠한 사권도 설정할 수 없다. 단, 평창군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 ① 평창군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에 대하여 강원도(평창소방서)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한다. 허가조건 등 무상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화 119안전센터 근처 시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폐쇄함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폐지한다.

#### 제7조(중도 해제·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창군은 본 합의를 중도 해제·해지(이하 “해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관리·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설물의 노후화나 기능저하 등으로 철거가 결정된 경우
  3.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의 목적의 수립이나 철거가 결정된 경우
- ② 본 협약은 평창군과 강원도(평창소방서)의 합의로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 ③ 평창군은 평창군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등에 대하여 강원도(평창소방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강원도(평창소방서)는 강원도(평창소방서)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등에 대하여 평창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원상복구 등)

- 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제 등을 하는 경우 축조된 영구시설물은 강원도(평창소방서)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평창소방서)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창군이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강원도(평창소방서)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협정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평창소방서)는 평창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정보교류) 평창군과 강원도는 본 합의의 상호협력을 위해 각종 현황 등 관련된 제반 자료를 상호 정보 공유하며,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한다.

제10조(재산교환 등)

- ① 평창군과 강원도는 대화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의 도유지 교환을 추진한다.
- ② 교환기간(1-2년) 소요로 해당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증축사업 행정절차 진행하고 도유지 교환은 별도로 병행 추진한다.

제11조(의무 및 책임) 합의 당사자인 평창군수와 강원도지사는 본 사업과 관련,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

제12조(합의의 해석) 본 합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영구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평창군과 강원도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합의의 효력) 영구시설물 축조는 평창군의회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 합의의 효력은 합의서에 기명날인 하고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재협의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당 합의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3월 일

평창군수 한왕



강원도지사 최문순



# [붙임 4] 군비 부담금 예산반영 요청 공문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 강 원 도



수신 평창군수(안전교통과장)

(경유)

제목 대화119안전센터 청사 증축사업 군비 부담금 예산반영 변경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부담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사업

나. 사업기간: 2023년~2024년(2년차 계속비)

다. 사업부지: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934, 대화안전센터 부지 내

라. 증축규모: 철근콘크리트조 2층, 450㎡ 내외 ※기존청사 면적 398.79㎡

마. 연도별 사업비 부담액

| 부담주체 | 연도별 부담액(단위 : 천 원) |         |         | 비 고        |
|------|-------------------|---------|---------|------------|
|      | 계                 | 2023년   | 2024년   |            |
| 계    | 1,400,000         | 800,000 | 600,000 |            |
| 강원도  | 700,000           | 400,000 | 300,000 | 도·군비 각 50% |
| 평창군  | 700,000           | 400,000 | 300,000 |            |

3. 아울러, 2023년 도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요구예정이오니 군비 예산편성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 원 도 지 서



소방장 김경필 소방경 김진석 소방장비회계 전결 2022. 8. 19. 과장 이재동

협조자 예산회계팀장 민병욱

시행 소방장비회계과-10603 (2022. 8. 19.) 접수 안전교통과-74366 (2022. 8. 19.)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강원도소방본부 (봉의동) / <http://fire.gwd.go.kr>

전화번호 033-249-5355 팩스번호 033-249-4189 / [lemonade13@korea.kr](mailto:lemonade13@korea.kr) / 비공개(5)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